

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(안) 심사보고서

2004. 7. 6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
 나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1일
 다. 상정일자 :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 (2004. 7. 2)
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(2004. 7. 5)
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 (2004. 7. 6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재정국장 박 태 규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.

나. 주요골자

○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
합 계	416,275,000	113,772,020	300,110,000	2,392,980
일반회계	416,275,000	113,772,020	300,110,000	2,392,980
특별회계	0	0	0	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4억1,627만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선거관리에서 2003년도 마포구의회의원(동교동) 보궐선거 비용으로 7,600만440원, 민방위관리에서 세무1과 공익 근무요원 사망보상금 등으로 3,507만1천580원, 건축관리에서 2003년도 수해피해(주택 반파3동)복구 자치구 부담액 270만원 등 총 1억1,377만2천20원이 지출되고, 도시관리에서 아현 뉴타운 및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자치구 부담액 3억11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, 집행잔액(불용액)은 239만2천980원이 발생되었음.

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